



연금저축 과세제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

오병국 연구원

요약

■ 2012년 세제당국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였음. 이 조치는 2013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로 발생하는 순조세비용을 낮출 것으로 보임. 그러나 순조세비용의 감소로 인한 세부담 경감 혜택이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보다 폭넓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하며, 이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도 필요할 것임. 다만, 연금저축 가입자의 납부현황을 고려할 때 납입한도의 단순한 상향조정만으로는 연금저축 납부금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.

■ 2012년 세제당국은 사적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음.

- 동 세법개정을 통해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한도가 상향조정되고, 연금수령연령이 높아질수록 분리과세율이 낮아지게 됨.
 -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에 공적연금, 퇴직연금, 연금저축을 포함한 600만 원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하고,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1,200만 원으로 상향하였음.
 - 연금수령연령과 관계없이 55세 이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5% 적용하던 것을 55세 이후 수령 5%, 70세 이후 4%, 80세 이후 3% 등으로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분리과세율을 차등 적용함.

■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 가입 계약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로 발생하는 순조세비용(net tax cost)이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.

- OECD(2005)¹⁾에서 소개하고 있는 순조세비용 산출방법과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를 고려할 경우 연금저축 과세로 발생하는 순조세비용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금액(현재가치로 환산)과 동일함.

1) OECD(2005), "Tax Treatment of Private Pension Savings in OECD Countries".

- 순조세비용은 연금저축납부액에 대한 과세금액의 현재가치, 연금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금액의 현재가치, 연금소득 수령액에 대한 과세금액의 현재가치를 모두 더한 것임.
- 연금저축 납부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, 연금저축 운용수익에 대하여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순조세비용의 크기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함.
- 이를 참고하면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제도 개선이 연금저축 과세로 인한 순조세비용을 예전보다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 - 600만 원~1,200만 원의 연금소득구간에서 발생하는 과세금액이 낮아지고, 연금수령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원천분리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연금소득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임.

■ 그러나 순조세비용의 감소로 인한 세부담 경감 혜택이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보다 폭넓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하며, 이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도 필요할 것임.

-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발생될 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,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 - 이는 연금저축제도 설계상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임.

■ 다만, 연금저축 가입자의 납부현황을 고려할 때 납입한도의 단순한 상향조정만으로는 연금저축 납부금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.

- 정부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납부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1,200만 원에서 1,8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.
- 하지만 2012년 말 기준 10년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평균 납입금액은 최대 156만 원²⁾에 불과하여 납입한도의 상향조정이 납부여력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어려울 것으로 보임. **kiri**

2) 금융감독원(2012), 「금융소비자리포트(제1호: 연금저축)」.